

준사서 자격제도의 변천과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

- 도서관법 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islative Changes and Operational Status of the Assistant Librarian Qualification System in Korea: Focusing on the Revision of the Libraries Act

조 상 은 (Sang-Eun Cho)* 양 지 안 (Ji-Ann Yang)**
이 수 영 (Su-Young Lee)*** 진 나 영 (Na-Young Jin)****

목 차

- | | |
|-----------------|--------------------|
| 1. 서 론 | 4. 준사서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 |
| 2. 이론적 배경 | 5. 논 의 |
| 3. 준사서 자격제도의 변천 | 6. 결 론 |

초 록

본 연구는 준사서 자격제도의 법령상 변천과 운영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설계와 운영 현실과의 간극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1963년 「도서관법」 제정부터 2026년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까지 관련 법령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한국도서관협회의 1966~2025년 사서 자격증 발급 통계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987년 확립된 전문대학 졸업·지정교육기관 이수·대학 부전공의 세 경로 체계는 약 40년간 실질적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며, 2026년 시행령 개정으로 승급 단계의 경력 차등은 일원화되었으나 자격취득 단계의 요건 정비는 유보된 상태이다. 반면 운영 현실에서는 준사서 발급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급정사서 중심의 재편이 진행되었고, 준사서 취득 경로 안에서도 전문대학 경로는 감소한 반면 지정교육기관 경로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법령이 상정한 전문대학 중심의 양성 원칙과 운영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그간 논의가 부족했던 준사서 자격제도의 변천과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향후 사서 자격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legislative changes and operational status of the assistant librarian qualification system in Korea. Relevant legislation from the enactment of the Libraries Act in 1963 to the 2026 amendment to its Enforcement Decree and librarian qualification statistics from 1966 to 2025 provided by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were analyzed. The three qualification pathways established in 1987 have remained substantively unchanged for approximately 40 years, although the 2026 amendment unified only the career requirement for promotion. In practice, assistant librarian certificates have steadily declined as the qualification structure has shifted toward second-class librarian certificates. Within the assistant librarian qualification system, the junior college route has declined, whereas the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 route has expanded substantially. These findings reveal a persistent gap between the legislative framework and its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and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future research and policy discussions on Korea's assistant librarian qualification system.

키워드: 준사서, 사서 자격제도, 도서관법, 준사서 양성 체계, 준사서 자격취득 현황

Assistant Librarian, Librarian Qualification System, Libraries Act, Assistant Librarian Education System, Status of Assistant Librarian Qualification Acquisition

* 대림대학교 도서관미디어정보과 조교수(secho@daelim.ac.kr / ISNI 0000 0005 1358 5527) (제1저자)

** 승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조교수(jiannyang@sewu.ac.kr / ISNI 0000 0004 9302 4975) (공동저자)

*** 대림대학교 도서관미디어정보과 부교수(sulibrary@daelim.ac.kr / ISNI 0000 0004 7919 3473) (공동저자)

**** 승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조교수(jny415@sewu.ac.kr / ISNI 0000 0004 6098 9906)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6년 7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26년 8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8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3): 189-215, 2026. <http://dx.doi.org/10.4275/KSLIS.2026.60.3.189>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사서 자격제도는 1963년 「도서관법」(법률 제1424호) 제정을 계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법령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곽동철(2009)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서 자격증은 국가자격이면서도 검정 절차 없이 문헌정보학 전공자나 관련 과목 학점 충족자에게 그대로 주어졌고 대학 밖 단기 양성과정으로도 취득할 수 있어, 국가자격 본연의 공신력이 흔들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처럼 사서 자격제도를 둘러싼 문제의식은 오래된 것이지만, 제도는 수십 년간 기본 구조를 유지한 채 실질적 변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간 문헌정보학계는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개선 방향을 제안해 왔다. 곽동철(2009)은 1963년부터 2006년에 이르는 사서 자격제도의 변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단기적으로는 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장기적으로는 전문대학원 중심의 자격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곽동철 외(2009)의 설문조사 역시 이러한 방향에 대한 현장의 지지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안인자 외(2014)는 현행 사서 자격 구분이 학력과 근무 경력 기간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오지은과 정연경(2013)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격시험 도입으로 사서의 역량을 검증하는 한편 계속 교육 기반의 재인증 및 교육과정 인증제로 양성

과정의 질을 담보하자고 주장하였고, 홍현진 외(2021) 역시 타 분야의 인증제도 사례를 바탕으로 유사한 방향의 대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 같은 개선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자격취득 구조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분화되어 왔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사서자격증 취득 비중은 2007년 0.7%에서 2024년 31.8%로 급증한 반면, 대학 정규 과정을 통한 비중은 같은 기간 84.1%에서 58.8%로 하락하였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25). 준사서 자격의 경우 누적 취득자 36,135명(2025.6.30.기준) 가운데 지정 교육기관 이수자가 25.3%를 차지하고 있어(국가도서관위원회, 2025),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졸업이 준사서 양성의 실질적 중심이라는 현행 제도의 전제는 운영 현실과 차이가 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21) 역시 교육기관별 이수학점 및 교육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국가자격증이 수여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사서 양성 및 자격취득 교육기관의 난립에 따른 전면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도서관 전문 인력 역량 강화 특별전문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로 지칭)는 2급정사서 자격요건에 대해 전공 51학점(필수 9과목, 선택 8과목) 이수과 사서현장실습 120시간 필수화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25). 그리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별표 4]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 중 준사서 자격요건의 핵심 조항인 가목(전문대학 문헌정보과 졸업)과 나목(전문대학 졸업 후 지정교육기관 이수)에 대해서는 전문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

단하에 ‘추후 논의’로 유보하였다. 준사서 자격요건의 핵심 경로에 해당하는 가목과 나목이 개선 논의의 결론 없이 유보된 것은 준사서 자격제도가 오랫동안 직면해 온 구조적 미결과제를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는 제도적으로 준사서 양성의 중심 기관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자격취득 경로의 다원화와 지정교육기관의 확대 속에서 그 위상은 실질적으로 흔들려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사서 자격요건의 설계와 운영이 어떠한 역사적 경과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제도적 설계와 실제 자격취득 현황과의 간극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서 자격제도를 둘러싼 그간의 논의가 주로 개선 방향의 제안에 집중되어 온 반면 준사서 자격제도 자체의 변천 경위와 운영 실태를 역사적·통계적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준사서 자격제도의 변천 경위와 운영 실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제도운영의 현실을 성찰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는다. 더 나아가 준사서 양성 과정에서 전문대학 문헌정보학 교육이 지녀온 역할을 재검토하여 사서 자격제도 개선과 문헌정보학 교육 발전에 실질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문헌 연구, 법령 분석, 공식 통계자료 분석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첫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사서 자격제도 전반에 관한 학술적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고 본

연구의 학문적 위치를 확인하였다. 검토 대상은 사서 자격제도의 변천, 자격요건 개선, 자격인증제도 도입, 사서 전문성 강화 등을 주제로 한 국내 학술논문 및 정책 연구보고서로 한정하였다.

둘째, 법령 분석을 통해 준사서 자격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고찰하였다. 1963년 「도서관법」(법률 제1424호) 제정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도서관 관련 법령의 제·개정 경과를 시기별로 추적하고, 각 시기에 따른 준사서 자격요건의 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법령은 「도서관법」(법률 제1424호), 「도서관법」(법률 제3972호), 「도서관진흥법」(법률 제4347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법률 제4746호),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하며, 2026년 5월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322호)까지 분석 범위에 포함하였다.

셋째, 준사서 자격취득 현황 분석은 한국도서관협회로부터 협조를 받아 준사서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한 1965년부터 2025년까지의 준사서 자격취득 현황과 경로별 발급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자격취득의 연도별 추이와 경로별 구성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준사서 제도가 최초로 법제화된 1963년부터 2026년 6월까지이며, 내용적 범위는 준사서 자격제도의 법령상 변천, 연도별·경로별 준사서 자격취득 현황으로 한정하였다. 사서 자격제도 전반 또는 정사서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은 준사서 자격제도와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그림 1>에 정리하였다.

연구 목적	준사서 자격제도의 법령상 변천과 취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사서 자격제도의 개선을 위한 균형 잡힌 논의의 토대 제공		
연구 방법	문헌 연구	법령 분석	통계자료 분석
	사서자격제도 변천 · 개선 · 인증 · 전문성 관련 학술논문 및 정책 보고서	1963년 도서관법 ~ 2026년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2호)	한국도서관협회 협조 1965~2025년 준사서 자격취득 현황
연구 범위	시간적 범위	1963년(도서관법 제정) ~ 2026년 6월	
	내용적 범위	준사서 자격제도 법령상 변천	준사서 자격취득 (연도별 · 경로별) 현황

〈그림 1〉 연구 목적과 방법 및 범위

2. 이론적 배경

2.1 전문직 자격제도의 개념

2.1.1 전문직의 개념

전문직(profession)은 일반 직종과 구별되는 고유한 속성을 지닌 직업 범주이다. 전문직이란 특정 영역의 과학적 · 역사적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특별한 지적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해 장기간의 정밀한 준비 교육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조직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높은 수준의 업적과 행위를 유지하는 직업이다(남태우, 1990). 전문직은 일반 직종과 구별되는 고유한 속성을 지닌 직업 범주로, Greenwood(1957)는 체계적인 이론, 전문직 권위, 공동체 제재, 윤리강령, 전문직 문화를 전문직의 5대 속성으로 규명하였다. 전문직 이론에서 자격(qualification)은 단순한 학력 인정을 넘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자만이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적 기제이다. 자격제도는 전문직 진입

요건을 규정하고 직업 집단 내부의 질적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문직의 사회적 권위와 배타적 업무 영역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해당 집단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특수 지식을 전유한다는 사실은 이 독점적 지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나아가 전문직이 시장 경쟁 원리나 관료적 통제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Larson, 2003). 이와 함께 자격제도는 이용자 또는 공중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자격제도의 또 다른 핵심 기능이며, 이는 국가가 특정 전문직 자격을 법률로써 관리하는 근본적 이유이기도 하다(한국노동연구원, 2003).

2.1.2 전문직 자격제도의 유형

전문직 자격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교육과정 이수형은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국노동연구원(2003)은 이를 교육훈련과 자격이 직접 연계된 형태로 설명한다. 진입 경로가 넓고 인력 양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격취득 여부가 교육과정 이수 자체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격증의 변별력이 낮고 공급 과잉을 초래하기 쉬운 구조적 취약점을 지닌다. 현행 한국의 사서 자격제도가 이 유형에 해당하며, 오지은과 정연경(2013)은 학점 이수만으로 자격증이 자동 발급되는 이 구조가 사서 자격 소지자의 양적 팽창과 전문성 저하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둘째, 자격시험형은 국가 또는 공인 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한국노동연구원(2003)은 이 유형이 자격 취득자의 능력을 직접 검증한다는 점에서 자격의 신뢰성과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의사·변호사·간호사 등 면허직(licensed profession)이 대표적 사례이며, 합격률 조정을 통한 인력 수급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동열(2007)은 사서 자격에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임용고시 및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중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하였다. 셋째, 교육과정 인증형은 교육기관이나 교육프로그램 자체를 공인 기관이 인증하고, 인증된 프로그램의 졸업자에게 자격취득 자격을 부여하거나 자격을 공인하는 방식이다.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의 문헌정보학 대학원 교육프로그램 승인제도가 대표적이며, 이 방식은 자격 취득자의 교육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증하면서도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홍현진 외(2021)는 국가자격시험제도 도입이 어려운 현실에서 교육

과정 인증을 통해 자격 배출 과정을 통제하고 질을 담보하는 방법론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실제로 많은 전문직 자격제도는 이 세 유형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설계되며, 간호학·공학·건축학 등 타 분야에서는 교육과정 인증과 자격시험을 연계하는 복합 모형이 이미 안착하여 운영되고 있다(홍현진 외, 2021).

2.2 선행연구 분석

2.2.1 사서 자격제도 관련 선행연구

사서 자격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국외와 국내에서 그 초점을 달리하며 전개되어 왔다. 국외에서는 준전문직(paraprofessional) 사서 인력의 양성 교육과 직무, 자격을 다룬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Oberg(1992)는 미국 대학도서관에서 준전문직 인력이 부상하는 현상과 그 지위·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준전문직을 독립적 인력 범주로 조명하였다. Zhu(2012)는 미국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준전문직에게 요구되는 학력 수준과 직무 범위를 분석하여, 도서관 관련 준학사(associate degree) 학위를 자격요건으로 요구하는 사례와 직무 확대 경향을 확인하였다. Erickson과 Shamchuk(2017)은 캐나다의 준전문직 사서 양성 디플로마 과정 14개를 분석하여, 이들 과정이 실무 기술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교육과정에 이론적 내용을 보강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국의 커뮤니티칼리지가 운영하는 준학사(Associate of Applied Science, AAS) 수준의 도서관실무보조(Library Technical Assistant, LTA) 과정, 미국도서관

협회 산하 ALA-APA(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Allied Professional Association)의 도서관지원인력자격(Library Support Staff Certification, LSSC), 그리고 영국 도서관정보 전문가협회(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의 입문 단계 전문등록 인증(Certification, ACLIP)과 같이,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양성이나 직능 단체의 역량 기반 자격인증을 통해 준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인증하는 제도를 배경으로 한다(ALA-APA, n.d.;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n.d.; CILIP, n.d.).

한편 국내 사서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는 정부 주도 정책연구보고서와 학술논문의 두 갈래로 축적되어 왔다. 두 계열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접근 방식과 강조점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며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 주도 정책보고서 계열은 법령 개정과 제도 운영의 실무적 필요에 의해 주기적으로 수행되었다.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2008)의 연구는 국내 33개 대학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과 자격증 발급 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보고서는 사서 양성기관별 이수학점 현황, 자격증 발급 통계, 직무 요건 분석을 토대로 자격요건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다수의 학술논문 및 정책보고서에서 기준 통계로 광범위하게 인용되었다. 뒤이어 도서관정책기획단(2015)의 「사서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도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사서 자격제도와 양성 체계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2급정사서의 표준교과

모형과 필수·선택 교과목 개선안, 최소 이수 학점 상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21)의 「사서 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사서 역할 변화에 대응하는 자격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표준교육과정의 필수·선택 교과목 구성(안)과 최소이수학점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아울러 2021년 10월 한국도서관협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서관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가장 최근의 정책 논의는 국가도서관위원회(2025)의 워킹페이퍼 「도서관 전문 인력 역량 강화 방안 연구」이다. 이 연구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핵심과제인 '도서관 전문 인력 역량 강화'와 연계하여, 2급정사서의 이수학점을 필수 27학점·선택 24학점 합계 51학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합의하였으며, 준사서의 경우 전문대학 및 지정교육기관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추가 의견 수렴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국내 사서 자격제도에 관한 학술논문은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자격증 취득 요건 및 개선 방향 연구로는 남태우(1996)가 학부제 시행으로 인한 전공이수 약화와 사서 국가고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최초로 학술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정동열(2007)은 사서 자격제도 개선안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직무교육과 연수를 통해 내부 전문성을 강화하는 모형, 둘째, 문헌정보학 전공 이수 최소학점을 상향 조정하는 전공 이수 최소학점제 모형, 셋째, 국가 차원의 사서 자격시험을 도입하는 자격시험제도 모형, 넷째, 전문대학원에서 전공을 이수한 자에게 자

격증을 부여하는 전문대학원 모형이다. 이 연구는 이후 사서 자격제도 개선 논의의 기본 준거틀로 폭넓게 인용되고 있다. 박동철 외(2009)는 문헌정보학계, 도서관계, 일반인 1,752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을 실시하여 도서관계의 여론을 집약적으로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31.2%가 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27.7%), 이수 과목 지정(21.7%)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연구는 현장의 의견이 이론적 논의와 대체로 일치하면서도 실행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 오지은과 정연경(2013)은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과 도서관 취업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필리핀의 국가사서자격시험제도를 해외 사례로 상세히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자격증 공급과 고용 수요 간의 불균형을 수치로 실증하고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장 포괄적인 개선 방안 연구로 평가된다. 홍현진 외(2021)는 국가사서자격시험제도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인증을 통한 질 관리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자격시험 중심 논의를 보완하는 중요한 연구이다.

2.2.2 선행연구의 특징과 한계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사서 자격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된 학술적 기여를 한다. 그러나 연구 대상의 범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주요한 공백이 발견된다. 앞서 살펴본 국외 연구가 준전문직 사서를 독립적 검토 대상으로 삼아 온 것과 달리, 국내 연구는 2급정

사서 자격의 취득 요건 개선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으며, 준사서 자격은 독립적인 연구 대상으로 별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준사서가 다루어지는 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준사서는 부수적인 언급의 대상에 머물거나 전체 사서 자격 발급 통계를 제시하는 맥락에서 수치로만 등장한다. 정동열(2007)의 4가지 개선 모형, 박동철 외(2009)의 설문, 오지은과 정연경(2013)의 자격시험제도 도입 방안, 홍현진 외(2021)의 교육과정 인증 방안 모두, 2급정사서 자격을 부여하는 4년제 대학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을 주된 제도 개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준사서 자격의 취득 요건 자체, 준사서 자격의 존치 필요성, 또는 준사서의 역할과 직무 범위에 관한 독립적인 논의는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준사서 자격을 단독으로 집중 검토한 연구가 제한적인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준사서 자격과 2급정사서 자격의 관계, 준사서의 전문직 위상, 준사서 양성 기관인 전문대학 문헌정보과의 교육 현황과 문제점, 2급정사서로의 승급 경로의 적절성, 준사서 자격과 고용 현실 간의 괴리 등은 모두 독립적인 학술적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과제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준사서 자격에 초점을 맞추어 그 법적 제도, 자격취득 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2급정사서 중심 논의를 보완하여, 사서 자격제도의 개선과 문헌정보학 교육 발전을 위한 보다 균형 잡힌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준사서 자격제도의 변천

3.1 도서관법 제정기: 준사서 제도의 출발 (1963~1986)

사서자격제도는 1963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된 「도서관법」(법률 제1424호)을 통해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이 법률 제6조 제2항은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의 자격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1965년 3월 26일 제정된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86호) 제4조 제1항에서 사서 직원의 자격 유형을 '정사서'와 '준사서'의 이원 구조로 구분하고, 각각의 자격요건을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이 시기 준사서 자격요건은 정규 학위 교육이 아닌 강습 이수와 현장 경력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① 초급대학 졸업자(실업고등전문학교 졸업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사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문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320시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사서는 대학의 도서관학과 졸업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양 자격 간에는 학력 기반 격차가 제도적으로 내재하고 있었다.

「도서관법시행령」은 1967년과 1969년 두 차례 개정되었으나, 준사서 자격 구조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도서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64호; 대통령령 제4191호). 이 시기에는 전문대학을 준사서 자격취득의 정규 교육 경로로 명시하는 조항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

며, 준사서는 강습 이수나 현장 경력을 통해 배출되는 보조 인력으로 제도화되는 데 그쳤다. 이후 1977년에 개정된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8583호)에서 준사서 자격요건으로 '3. 교육법시행령 제1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도서관학을 이수한 자'가 추가되었다.

3.2 도서관법 개정 및 전환기(1987~2005)

3.2.1 도서관법 개정(1987): 전문대학 경로의 법제화

1987년 11월 28일 개정된 「도서관법」(법률 제3972호)과 1988년 8월 16일 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06호)은 준사서 자격제도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개정으로 평가된다. 이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3]에서는 종래 강습 이수 중심이던 준사서 자격요건을 전면 재편하여, ① 전문대학 도서관과 졸업자, ② 전문대학(중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 포함)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을 부전공한 자의 세 경로를 준사서 취득 요건으로 명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강습·경력 중심 요건을 폐지하고 정규 학제 이수를 준사서 자격의 기본 조건으로 확립한 것으로, 제도적 의의가 크다. 특히 전문대학 도서관과 졸업자를 준사서 취득의 정규 경로로 처음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전문대학이 준사서 양성 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한편 2급정사서로의 승급 요건에서 준사서의 필수 근무 경력이 최초로 4년으로 명

시되어, 상위 자격으로의 경력 연계 경로도 처음으로 체계화되었다. 또한 1989년 3월 25일 제정된 「도서관법시행규칙」(문교부령 제570호)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서 자격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규정하고,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과의 설치된 대학에 부설한 기관을 지정교육기관으로 명시하였다. 아울러 준사서 자격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으로 도서관·정보학개론,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자료조직론(I), 비도서자료론, 참고봉사론, 도서관경영론(I) 7과목이 [별표]에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곽동철, 2009).

3.2.2 도서관진흥법(1991) 및 도서관및독서진흥법(1994): 제도 정비와 경로 조정

1991년 3월 8일 제정된 「도서관진흥법」(법률 제4347호)과 동년 4월 8일 제정된 「도서관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342호)에서는 준사서 자격요건의 기본 골격이 유지된 가운데, 두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학과 명칭의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종전의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이라는 표기 순서가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국내 대학에서 학과 명칭이 도서관학에서 대부분 문헌정보학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법령이 반영한 결과이다. 둘째, 준사서가 2급정사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근무 경력이 종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는 준사서 취득자의 상위 자격 진입 장벽을 낮추어 자격 이동을 촉진하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1년 7월 16일 제정된 「도서관진흥법시행규칙」(문화부령 제7호) 제7조(사서자격 교육

과정)에서는 종전 시행규칙의 사서 자격 교육기관 '추가 지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에 지정된 두 기관(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 계명대학교 사서교육원)만을 유지하는 교육내용 중심의 규정으로 체계를 재편하였다. 이와 같이 신규 지정 절차를 폐지한 상태에서도 1997년 문화체육부가 부산여자대학 부설 사서교육원을 사서 자격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한 것은, 법적 근거의 명확성 면에서 논란을 야기하였다(곽동철, 2009). 또한 이 시행규칙에서는 준사서 자격 필수과목에 저작권론(I)이 새롭게 추가되어 정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1994년 3월 23일 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법률 제4746호)과 동년 7월 23일 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대통령령 제14339호)에서는 이전 법령의 기본 틀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준사서 자격요건 자체에는 변동이 없었다. 다만 2급정사서 자격요건에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 교육 또는 사서 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새롭게 인정하는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상위 자격으로의 진입 경로가 처음으로 다원화되었다(곽동철, 2009). 또한 동년 8월 12일 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문화체육부령 제16호)에서는 준사서 자격 교육과정에서 독서지도론(I)과 2급정사서 자격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으로 독서지도론(II)를 각각 추가하여, 독서진흥이라는 입법 취지가 교육과정 수준에서도 반영되었다.

이 시기까지의 변천 내용을 <표 1>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표 1〉 준사서 자격요건 및 관련 제도의 변천(1963~2005)

구분	도서관법 [법률 제1424호] 1963.10.28.	도서관법 개정 [법률 제3972호] 1987.11.8.	도서관진흥법 [법률 제4347호] 1991.3.8.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법률 제4746호] 1994.3.23.
준사서 자격 요건	1. 초급대학 졸업자(실업 고등전문학교 졸업자 포 함) 또는 동등 이상 학력 자로서 도서관학 관련 15학점 이상 또는 240 시간 강습 이수자 2.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사 서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로서 20학점 또는 320시 간 강습 이수자	1. 전문대학 도서관과 졸 업자 2.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지정교육기 관 교육과정 이수자 3. 대학 졸업자로서 도서 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부전공자	1. 전문대학 도서관과 졸 업자 2.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지정교육기 관 교육과정 이수자 3. 대학 졸업자로서 문헌 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부전공자	1. 전문대학 도서관과 졸 업자 2.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지정교육기 관 교육과정 이수자 3. 대학 졸업자로서 문헌 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부전공자
	[도서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086호) 1965.3.26.] → 사서직원의 자격유형을 '정사서'와 '준사서'로 구 분하고, 각각의 자격 요 건을 처음으로 명시	[도서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2506호) 1988.8.16.] → 준사서 자격요건에 전문 대학 경로 최초 법제화	→ 준사서 자격요건 변동 없 음. '문헌정보학' 표기 순 서만 조정	→ 준사서 자격요건 변동 없음
2급 정사서 승급 요건	해당 없음	[도서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2506호) 1988.8.16.] 준사서 자격증 소지 + 도 서관 근무경력 4년 이상 + 지정교육기관 이수 → 준사서 경우 승급 경로 최초 명시	[도서관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342호) 1991.4.8.] 준사서 자격증 소지 + 도 서관 근무경력 3년 이상 + 지정교육기관 이수 →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준사서 자격증 소지 + 도 서관 근무경력 3년 이상 + 지정교육기관 이수 (유지)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 행령(대통령령 제14339 호)1994.7.23.]교육대 학원에서 도서관교육· 사서교육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추가 인정 (준사 서 경우 불요)
준사서 교육과정 필수과목	별도 규정 없음 (강습 시간·학점 기준만 존재)	[도서관법시행규칙 (문교부령 제570호) 1989.3.25.] 준사서 자격교육과정 필 수과목(7과목) 지정	[도서관진흥법시행규칙 (문화부령 제7호) 1991.7.16.] 기존 7과목+ 저작권론(I) 추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부령 제16호) 1994.8.12.] 기존 8과목 + 독서지도론 (I) 추가

3.3 현행 도서관법 체계(2006~현재)

3.3.1 도서관법 전부개정(2006): 현행 자격
체계의 확립

수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2006년 10월 4일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이 전부개정·공포

되었다. 이어 2007년 3월 27일 「도서관법시행
령」(대통령령 제19963호)과 2007년 4월 4일 「도
서관법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161호)이 순
차 제정·공포됨으로써 현행 사서 자격제도의
법적 기반이 완성되었다(곽동철 외, 2009).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은 「도서관및독

서진흥법」을 전면 대체하는 입법으로, 사서 자격제도 측면에서 두 가지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동법 제6조 제2항에서 사서 직원의 자격 구분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하도록 재정비하였고, 이에 따라 2007년 3월 27일 제정된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963호) 제4조(사서 직원 등)에서 종전 시행령의 제4조(배치기준)와 제5조(자격요건)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체계가 정비되었다(곽동철, 2009).

둘째, 2007년 4월 4일 제정된 「도서관법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161호)에서는 그간 시행규칙 [별표]로 제시되어 온 사서 자격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이 삭제되고, 이를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문화관광부고시 제2007-9호)로 별도 고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사서 자격 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1학점은 16시간 이상의 강의(실습 포함)로 규정되었다(곽동철, 2009).

준사서 자격요건 자체는 이전 법령의 세 경로를 그대로 유지하되, 2008년 6월 5일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797호) [별표 3]에서 ①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 학과 전공자, ②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중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로 명시되었다. 이 개정에서 주목할 변화는 요건 ①에 사이버대학의 전문학사 졸업자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점으로,

원격교육의 확산이라는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를 자격 건에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200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성된 준사서 자격요건의 기본 틀은 이후 2023년 개정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변동 없이 지속되었으며, 현행 체계의 근간으로 기능하였다.

3.3.2 도서관법 개정(2023): 현행 유지와 준사서 자격의 과제

2023년 8월 8일 개정된 「도서관법」(법률 제19592호)과 이에 따라 2024년 5월 28일 개정된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34533호)의 [별표 4]에서 준사서 자격요건의 기본 구조는 변동 없이 존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존속이 제도의 안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도서관위원회(2025)는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심층 검토를 통해 현행 준사서 자격요건에 대한 다수의 쟁점을 공식 제기하였다. 첫째, 가목(전문대학 졸업 경로)과 관련하여 전공학점 이수 기준의 명시 여부가 논의되었다. 현행 가목은 졸업 요건만을 충족 조건으로 규정할 뿐, 문헌정보학 관련 전공학점에 대한 최소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25). 전문대학 문헌정보과의 전공 이수학점(57~67학점)이 지정교육기관(30학점) 및 부전공(통상 24학점)과 비교할 때 현저히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준사서 자격을 부여하는 현 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둘째, 나목(지정교육기관 이수 경로)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격취득 경로의 과잉으로 인한 인력 공급 과잉 우려와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어, 단계적 폐지 가능성을 포함한 논의

가 이루어졌다. 셋째, 다목(대학 부전공 경로)에 대해서는 문헌정보학 필수과목(27학점) 이수 기준의 구체적 명시 여부가 쟁점으로 논의되었으며 ‘필수 9과목(27학점, 사서현장실습세미나 포함) 이수’를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이 종합되었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25). 반면 전문대학 및 지정교육기관 관련 조항, 즉 가목과 나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추가 의견 수렴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구체적 개정안을 확정하지 않고 논의를 유보하였다.

그러나 2025년 이후 이러한 경로 간 형평성 논의의 연장선에서, 2급정사서 승급 요건의 불균형 문제가 별도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소되었다. 2026년 5월 12일 개정·시행된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36322호)은 [별표 4] 제2호 2급정사서 자격요건 중 기존 ‘사목’-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도서관 관련 근무·연구 경력 1년 이상과 지정교육과

정 이수로 2급정사서 승급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준사서 자격을 취득한 자격자의 2급정사서 승급이 도서관 관련 근무·연구 경력 3년 이상과 지정교육기관에서의 지정교육과정 이수가 공통 기준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이는 전문대학 전공 경로(가목·나목) 출신 준사서와 대학 부전공 경로(다목) 출신 준사서 사이에 1991년 이후 지속되어 온 승급 경력 요건의 차등(3년 대 1년)을 폐지한 것으로, 준사서 자격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초의 구체적 조치라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부칙 제3조에서 시행 전에 대학에 이미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해당 재학생의 기존 법적 지위를 보장하였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의 변천 내용은 <표 2>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사서 자격요건은 1963년 제정기의 강습·경력 중심 요건에

〈표 2〉 준사서 자격요건 및 관련 제도의 변천(2006~현재)

구분	도서관법 전부개정 [법률 제8029호, 2006.10.4.]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797호] 2008.6.5.	도서관법 개정 [법률 제19592호, 2023.8.8.]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34533호] 2024.5.28. [별표 4]	도서관법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22호] 2026.5.12.
준사서 자격 요건	1. 전문대학(사이버대학 포함) 문헌정보과·도서관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학과 전공자 2. 전문대학(사이버대학 포함)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자 3.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부전공자 → 사이버대학 전문학사 졸업자 명시적 포함(원격교육 환경 변화 반영)	1. 가목: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 졸업자 2. 나목: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후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 이수자 3. 다목: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부전공자 → 세 경로의 실질 내용 변동 없음. 조문 형식(가·나·다목 체계)과 「고등교육법」 명시적 인용 방식으로 정비	준사서 자격요건 변동 없음 (가목·나목·다목 세 경로 유지)

구분	도서관법 전부개정 [법률 제8029호, 2006.10.4.]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797호] 2008.6.5.	도서관법 개정 [법률 제19592호, 2023.8.8.]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34533호] 2024.5.28. [별표 4]	도서관법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22호] 2026.5.12.
2급 정사서 승급 요건 (준사서 경유)	1. 준사서(①②경로) + 3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 + 지정교육기 관 이수 2. 준사서(③부전공경로) + 1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 + 지정교 육기관 이수 3. 공통: 준사서 자격증 + 석사학 위 취득 → 취득 경로별 승급 경력 요건 차등 최초 명시	1. 마목: 준사서 자격증 + 석사학 위 취득 2. 바목: 준사서(가·나목 경로) + 3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 + 지정교육과정 이수 3. 사목: 준사서(다목 경로) + 1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 + 지정교 육과정 이수 → 실질 내용 변동 없음. 조문 형식 정비	사목 삭제 <2026.5.12.> → 준사서 전 경로(가·나·다목) 에 바목으로 일원화: 준사서 자 격증 + 도서관 관련 근무·연구 경력 3년 이상 + 지정교육과정 이수 → 부전공 경로(다목) 출신의 1년 경력 폐지(부칙 제3조: 시행 전 대학 입학자에 경과조치 적용)
준사서 교육과정 필수과목	9과목(「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 정 및 이수학점」(문화관광부고시 제2007-9호)) → 교과 내용은 1994년 이후와 동일 하게 유지. 시행규칙 [별표]에서 고시로 전환	변동 없음(「사서교육기관의 교육 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문화체육 관광부고시 제2018-30호)) ※ 2025.11.11. 「도서관법」(법률 제21090호) 일부개정 있었으 나 준사서 자격요건 및 교육과 정 변동 없음	변동 없음

서 출발하여 1987년 개정을 통해 전문대학 졸
업·지정교육기관 이수·대학 부전공의 세 경
로 체계로 재편되었으며, 이 기본 구조는 이후
의 법령 개정을 거치는 동안 실질적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다. 다만 2026년 시행령 개정으로
승급 단계의 경로별 경력 차등이 일원화된 반
면, 자격취득 단계의 요건 정비는 추후 논의 과
제로 유보된 상태이다. 이러한 변천 과정의 제
도적 의미는 4장의 운영 현황 분석과 연계하여
5장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4. 준사서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

4.1 준사서 양성 체계

현행 「도서관법」에 따르면 준사서 자격은

첫째,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사이버
대학 포함)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 졸업자
(가목), 둘째,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후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 이수
자(나목), 셋째,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
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부전공자(다목)의 세 가
지 경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즉 준사서 양성
체계는 크게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중심의 정규
학위과정과 지정교육기관·4년제 대학 부전공
을 통한 경로로 구분된다. 본 절에서는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준사서 양성 체계의 구조와 운
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4.1.1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는 준사서 자격제도가
1987년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세 경로 체계로
개편된 이래 약 40년간 준사서 양성에 있어 법

적·제도적 중심축으로 자리해 왔다. 우리나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1970년 부산여자대학교의 문헌정보과 개설 이후 전국적으로 여러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신설하였으며, 이후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변모를 겪어왔다.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개설 및 운영 현황은 <표 3>에 정리하였다.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는 1970년대 부산여자대학교(1970)를 시작으로 송의여자대학교(1972), 계명문화대학교(1974), 동부산대학교(1979), 1980년대에는 창원문성대학교(1980), 시립인천전문대학(1981), 1990년대에는 대림대학교(1994), 동원대학교(1996)에서 문헌정보과를 개설하였다. 학과 개설의 정체를 거쳐 2020년대에는 명지전문대학(2021), 대원대학교(2023), 대전과학기술대학교(2024)가 문헌정보과를 연이어

개설하였다. 1970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문헌정보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은 총 12개교이나, 이 중에서 계명문화대학교, 동부산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동원대학교, 송곡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대원대학교 등 7개교는 신입생 모집 중지 및 학과 운영이 중단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전문대학 문헌정보과가 지난 수십 년간 현장 실무형 사서 양성에 기여해 왔으나, 급격한 인구 사회학적 변화와 대학 경영 환경의 악화, 사서 자격 취득경로의 다변화 등의 요인으로 전문대학 중심 양성 체계의 전반적인 양적 축소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6년 현재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학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부산여자대학교 보건복지학부 문헌정보과(야간), 송의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문헌정보과(야간), 송의여자대학교 사회실무학부 문헌정보과, 대림대학교 인문사

<표 3>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개설 및 운영 현황(1970~현재)

지역	교육기관명	개설연도	운영 현황
부산	부산여자대학교	1970	• 보건복지학부 문헌정보과(야간) 운영
서울	송의여자대학교	1972	• 사회실무학부 문헌정보과 운영 • 전공심화과정(3, 4학년 과정) 운영
대구	계명문화대학교	1974	• 폐과(2004)
부산	동부산대학교	1979	• 폐과(2005)
창원	창원문성대학교	1980	• 2024년부터 신입생 모집 중단
인천	시립인천전문대학	1981	• 인천대학교와 통합되어 학부 과정으로 운영(2010)
경기	대림대학교	1994	• 인문사회분야 도서관미디어정보과 운영 • 전공심화과정(3, 4학년 과정) 운영
경기	동원대학교	1996	• 폐과(2018)
강원	송곡대학교	2009	• 폐과(2011)
서울	명지전문대학	2021	• 미래융합학부 문헌정보과 • 2024년부터 신입생 모집 중단 (폐과)
제주	대원대학교	2023	• 미래융합학부 문헌정보과(야간) 운영 • 2026년부터 신입생 모집 중단 (폐과)
대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2024	• 미래생활융합학부 문헌정보과(야간) 운영

회분야 도서관미디어정보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미래생활융합학부 문헌정보과(야간)의 4개교이다.

이러한 양적 축소의 흐름 속에서도 현재까지 학과를 운영 중인 전문대학들은 도서관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4개교 모두 2년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2급정사서 자격취득에 대한 요구 및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림대학교와 숭의여자대학교는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3, 4학년 과정) 인가를 받아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및 2급정사서 자격취득을 할 수 있는 계속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다.

4.1.2 지정교육기관 및 대학 부전공

「도서관법」 나목에 해당하는 준사서 자격취득 경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후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 교육과정 이수하는 것이다. 지정교육기관이란 「도서관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 2026년 현재 전국에 3개의 사서교육원이 운영되고 있다. 지정교육기관 개설 및 운영 현황은 <표 4>에 정리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은 1974

년 준사서 과정을 분리하여 개설하였고, 계명대학교 사서교육원은 1989년, 부산여자대학교 부설 부산사서교육원은 2003년부터 준사서 과정을 증설하였다. 이들 기관은 3개 교육과정(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운영 중이며, 준사서 과정은 1년 2학기 체제로 단기간에 자격을 취득하도록 편성되어 있고, 이수학점은 약 30학점이다.

「도서관법」 다목에 해당하는 경로는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재학 중 문헌정보학(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으로 이수함으로써 준사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2026년 현재 전국 32개의 대학교에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들 대학교는 정규 단일전공 교육과정과 별도로 부전공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타 전공 소속 학생들에게 준사서 자격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준사서 자격 취득에 필요한 부전공 이수 학점은 별도로 법정화되어 있지 않아 대학별로 상이한 실정이나 통상 24학점 내외로 형성되어 있다. 2025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는 다목(대학 부전공) 경로에 대해 문헌정보학 필수 9과목(27학점, 사서현장실습세미나 포함) 이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25).

<표 4> 지정교육기관 개설 및 운영 현황

지역	교육기관명	개설연도 (준사서과정)	준사서 자격취득과정	
			기간	이수학점
서울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	1965 (1974)	1년(2학기)	30학점 이상
대구	계명대학교 사서교육원	1989 (1989)	1년(2학기)	31학점
부산	부산여자대학교 부설 부산사서교육원	1997 (2003)	1년(2학기)	30학점 이상

준사서 자격요건은 1963년 「도서관법」 제정 및 1965년 시행령 제정 당시 초급대학(현 전문대학) 졸업자를 기준으로 처음 마련되었다. 1987년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졸업이 정규 학위과정을 통한 준사서 취득 경로(가목)로 명문화되었고, 지정교육기관 경로(나목)와 대학 부전공 경로(다목)가 후속적으로 추가되었다. 이처럼 세 경로는 애초부터 동일한 시점에 병렬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상이한 시기와 배경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각 경로는 준사서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요구되는 이수 조건과 이수학점 또한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세 경로가 상이한 양성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준사서 자격취득 경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세 경로 각각의 이수 조건과 교과목 편성은 법령상 세부 기준 없이 개별 교육기관과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왔으며, 그 결과 동일한 명칭의 자격이 통일된 교육 기준 없이 부여되는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이는 준사서 자격제도가 도입 이후 여러 차례의 법령 개정을 거치면서도 자격요건의 형식적 경로만을 정비해 왔을 뿐, 그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는 표준교육과정의 마련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준사서 자격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목·나목·다목 전 경로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교육과정의 마련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4.2 준사서 취득 현황

본 절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공한 사

서 자격증 발급 통계를 바탕으로 준사서 자격 취득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연도별 발급 현황과 취득 경로별 발급 현황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1966~1999년 자료는 시기 통계자료에 따른 누적 현황이며, 2000년 이후 자료는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재구성하였다. 다만 마지막 구간은 최근 현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0~2025년으로 구분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대학, 지정교육기관, 대학 부전공으로 구성된 준사서 자격취득 경로의 기본 구조는 1987년 이후 실질적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다. 반면 실제 자격 취득 규모와 경로별 구성은 장기간에 걸쳐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특정 법령 개정 시기를 기준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개별 법령 개정보다는 발급 통계에서 확인되는 장기적 추이를 중심으로 준사서 자격취득 현황을 살펴보았다.

4.2.1 연도별 취득 현황

연도별 사서 자격증 등급별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966년부터 2025년까지 발급된 사서 자격증은 총 113,552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2급정사서가 73,209건(64.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준사서는 36,243건(31.9%), 1급정사서는 4,100건(3.6%)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기간별 추이를 보면 2급정사서의 비중은 2000~2004년 57.2%에서 2020~2025년 79.3%로 증가한 반면, 준사서의 비중은 같은 기간 39.4%에서 15.6%로 감소하였다. 발급 건수 기준으로 2급정사서는 7,060건에서 14,66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데 비해, 준사서는

〈표 5〉 연도별 사서 자격증 등급별 발급 현황(1966~2025)

연도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소계
	발급건수	비율	발급건수	비율	발급건수	비율	
1966~1999	957	2.2	24,968	56.3	18,405	41.5	44,330
2000~2004	411	3.3	7,060	57.2	4,866	39.4	12,337
2005~2009	568	4.7	7,442	61.5	4,095	33.8	12,105
2010~2014	527	4.2	8,529	68.6	3,379	27.2	12,435
2015~2019	681	4.9	10,549	76.2	2,616	18.9	13,846
2020~2025	956	5.2	14,661	79.3	2,882	15.6	18,499
합계	4,100	3.6	73,209	64.5	36,243	31.9	113,552

*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제공 자료(2026.6.23.) 재구성

4,866건에서 2,882건으로 감소하였다. 1급정사서는 전체 발급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2000~2004년 411건에서 2020~2025년 956건으로 증가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 사서 자격증 발급 구조는 분석 기간 동안 2급정사서 중심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급정사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준사서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서 자격취득 구조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2 경로별 취득 현황

준사서 자격취득 경로는 전문대학(가호), 지

정교육기관(나호), 대학 부전공(다호)으로 구분된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공한 경로별 발급 현황을 5년 단위로 재구성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발급된 준사서 자격증은 총 17,838건이다. 이 중 전문대학 경로가 11,209건(62.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지정교육기관은 5,667건(31.8%), 부전공은 962건(5.4%)으로 나타났다.

경로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문대학 경로의 비중은 2000~2004년 81.1%에서 2020~2025년 52.1%로 감소하였으며, 지정교육기관 경로는 14.9%에서 40.7%로 증가하였다. 반면

〈표 6〉 준사서 자격취득 경로별 발급 현황(2000~2025)

연도	전문대학		지정교육기관		대학 부전공		소계
	발급건수	비율	발급건수	비율	발급건수	비율	
2000~2004	3,946	81.1	725	14.9	195	4.0	4,866
2005~2009	2,592	63.3	1,277	31.2	226	5.5	4,095
2010~2014	1,919	56.8	1,296	38.4	164	4.9	3,379
2015~2019	1,251	47.8	1,195	45.7	170	6.5	2,616
2020~2025	1,501	52.1	1,174	40.7	207	7.2	2,882
합계	11,209	62.8	5,667	31.8	962	5.4	17,838

*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제공 자료(2026.6.23.) 재구성. 단, 경로별 구분 자료는 2000년 이후분부터 제공됨.

대학 부전공 경로는 전체 기간 동안 4~7% 수준을 유지하였다. 발급 건수 기준으로 전문대학 경로는 3,946건에서 1,501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지정교육기관 경로는 725건에서 1,17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전문대학 경로는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였으나,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지정교육기관 경로는 꾸준히 증가하여 두 경로 간 격차는 점차 좁혀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5~2019년에는 두 경로의 비중이 47.8%와 45.7%로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근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시기에 한정되지 않고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 것으로, 준사서 자격취득 경로 구성에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논의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준사서 자격제도의 변천(3장)과 현황(4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적 차원과 현황 차원에서 확인되는 특성의 의미를 논의한다. 5.1절에서는 도서관 법령의 변천 과정을 이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5.2절에서는 준사서 양성 체계 및 자격취득 현황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5.1 제도적 존속과 향후 과제

준사서 자격제도의 변천 과정을 제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법령 개정의 연속이 아닌 경

로 의존성(path dependency)과 점진적 제도 변화(gradual institutional change)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로 의존성 이론은 초기의 제도적 선택이 이후 경로를 제약하는 자기 강화(self-reinforcing) 메커니즘을 설명하며(Pierson, 2000), North(1991)는 한번 확립된 제도는 그것을 유지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기대가 형성되면서 변화 비용이 누적적으로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환경에서도 기존 경로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Mahoney와 Thelen(2009)은 제도가 외생적 충격 없이도 규칙의 해석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호성과 권력 관계의 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이론화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준사서 자격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1965년의 이원적 자격 구조 설계는 이후 제도의 초기 경로로 기능하였다.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6호)이 사서 자격 유형을 정사서와 준사서로 구분하면서, 전자는 대학 학위 교육에, 후자는 강습 이수와 현장 경력에 기초한 자격 체계가 출범 단계에서 확립되었다. Pierson(2000)이 지적하듯, 초기 선택은 이후의 선택지를 규정하는 경로를 생성하며, 제도의 출발 조건(initial conditions)은 이후의 발전 경로를 지속적으로 결정한다. 학력 기반의 위계가 제도 설계 단계에서 초기 경로로 내재화되어, 이후 자격요건이 구체화되고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자기 강화 메커니즘이 더욱 공고화되었다.

둘째, 1987년에 확립된 세 경로 체계가 약 40년 이상 유지되어 온 것은 경로 의존성의 자기 강

화 메커니즘이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Pierson (2000)은 Arthur(1994)의 논의를 인용하며, 새로운 제도는 도입 이후 학습 효과(learning effects)와 조정 효과(coordination effects)를 발생시켜 스스로를 강화한다고 설명한다. 학습 효과란 제도의 반복적 활용을 통해 축적된 경험이 해당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탈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조정 효과란 동일한 제도를 채택하는 행위자가 늘어날수록 그 제도에 참여하는 이점이 커지는 것을 가리킨다 (Pierson, 2000). 전문대학 졸업, 지정교육기관 이수, 대학 부전공의 세 경로가 체계화된 이후, 각 경로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해당 경로에 맞춘 교육과정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였고(학습 효과), 자격 취득자와 고용 기관 모두 기존 경로를 전제로 기대와 관행을 형성하면서 현행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해관계가 수렴되어 왔다(조정 효과). 2023년 「도서관법」 개정에서도 자격요건의 기본 골격이 실질적 변동 없이 존속된 것은 이러한 자기 강화 메커니즘이 누적적으로 작동해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Mahoney와 Thelen(2009)은 제도 변화가 외부 충격 없이도 규칙의 해석 및 집행 과정의 모호성(ambiguity)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이론화한다. 특히, 제도는 행위자들이 형식적 수단에는 합의하면서도 실질적 목표는 상이한 ‘모호한 타협(ambiguous compromises)’의 산물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모호성이 이후 제도 변화의 원천이 된다고 본다 (Mahoney & Thelen, 2009). 준사서 자격제도의 세 경로는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전문대학 문헌정보과(57~67학점), 지정교육기관(30학점), 대학 부전공(통상 24학점)은

서로 다른 이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동일한 준사서 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자격의 실질적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도적 모호성을 내포하며, 이 모호성이 사서직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내적 정합성 문제로 점차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국가도서관위원회(2025)의 심층 검토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향후 제도 정비 논의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를 시사한다. 이때 모호성은 제도를 정태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형식적 규칙을 그대로 둔 채 그 실질적 작동 방식을 서서히 바꾸어 놓는 점진적 변화의 통로로 기능한다(Mahoney & Thelen, 2009). 실제로 준사서 자격제도는 세 경로를 법령상 그대로 존치한 채 그 위에 학점은행제와 같은 새로운 취득 통로가 더해지고(겹층화, layering), 지정교육기관 경로의 비중이 전문대학에 근접할 만큼 확대되면서 ‘전문대학 중심의 정규 교육과정’이라는 제도 본래의 원칙이 규정의 변경 없이도 그 실효가 잠식되어 왔다(표류, drift). 요컨대 자격 기준의 모호성은 준사서 제도가 형식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안 그 기능적 위상이 약화되는 내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2026년 5월 개정·시행된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36322호)은 2급정사서 승급 요건 중 대학 부전공 경로(다목) 출신에게만 적용되던 1년 경력 요건을 삭제하여 경로별 승급 차등을 해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격취득 단계의 핵심 요건—가목의 전공학점 최소 기준 부재, 나목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조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Mahoney와 Thelen(2009)이 설명하듯, 제도 변화는 기존 규칙의 해석과 집행

과정에서의 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번 개정은 그러한 점진적 변화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격취득 단계의 핵심 요건에 대한 검토는 향후 제도 논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준사서 자격제도는 초기의 제도적 설계가 이후 법령 변천의 방향을 규정해 온 경로 의존적 성격을 지니며, 세 경로 체계의 장기적 지속과 부분적·단계적 개선이 병존하는 제도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경로별 요건의 정합성 확보와 자격취득 단계의 핵심 요건 정비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과제로, 향후 제도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5.2 자격제도 운영의 현실과 준사서 제도의 과제

앞 절에서 살펴본 법령 차원의 경로 의존적 안정성과 달리, 준사서 자격제도의 운영 현실은 법령 개정과 무관하게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겪어 왔다. 본 절에서는 준사서 자격취득 현황과 전문대학 기반 양성 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운영 차원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문제와 준사서 제도가 직면한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사서 자격제도의 유연화는 사서 인력의 양적 공급 확대라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었으나, 그 이면에서는 준사서 경로의 실질적 위상이 점차 약화되는 결과도 동시에 나타났다. 지정교육기관의 확대, 학점은행제 도입 등 자격취득 경로의 다원화로 인해 2급정사서의 비중은 2000~2004년 57.2%에서 2020~2025년 79.3%로 크게 확대된 반면, 준사서 자격증 발

급 비중은 같은 기간 39.4%에서 15.6%로 급감하였다. 이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준사서 자격 없이도 2급정사서를 직접 취득할 수 있게 된 제도적 환경에서, 준사서가 2급정사서로의 경유 자격으로서의 기능적 위상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준사서 자격취득 경로 내부에서도 확인된다. 전문대학 경로의 비중은 2000~2004년 81.1%에서 2020~2025년 52.1%로 감소한 반면, 지정교육기관 경로는 같은 기간 14.9%에서 40.7%로 급증하였다. 주목할 점은 지정교육기관 경로의 이수학점(30학점)이 전문대학 문헌정보과의 전공 이수학점(57~67학점)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준사서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지정교육기관은 전국 3곳에 불과하여 공급 기반 자체가 협소함에도 준사서 자격취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문대학에 근접한 수준까지 확대된 것은, 법령이 상정한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양성 원칙이 운영 현실에서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준사서 양성의 법적 중심 기관인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는 1970년 이후 총 12개교가 설치되었으나 이 중 7개교의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2026년 현재 운영 중인 학과는 4개교에 불과하다. 대림대학교와 숭의여자대학교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3·4학년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며 2급정사서 취득 경로를 내부화한 것 역시, 전문대학 현장에서도 준사서 자격만으로는 졸업생의 진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제도적으로 구체화 된 사례이다.

둘째, 준사서의 직무 범위와 역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정의가 부재한 채 제도가 운영되

어 왔다. 「도서관법」은 사서 직원의 자격 등급을 1급정사서·2급정사서·준사서로 구분하고 있으나, 각 등급에 부여된 직무 범위, 배치 기준, 등급 간 업무 분담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역할 정의의 공백 속에서 자격 취득자들은 준사서를 독자적인 직업 정체성과 결부된 자격이 아닌 잠정적 경유 자격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격 발급 구조는 2급정사서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재편되어 왔다. 도서관 서비스 현장에서 준사서가 담당해야 할 고유한 직무 영역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준사서 양성 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정당화할 근거 또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준사서 양성의 법적 중심 기관인 전문대학 문헌정보과가 사서 양성 체계 안에서 차지해야 할 제도적 위상을 정당화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준사서 자격제도의 재설계는 도서관 인력 체계 안에서 준사서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그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것을 토대로, 취득 경로의 정비와 이수학점 기준의 조정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논의는 전문대학 문헌정보학 교육의 제도적 위상 재정립과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사서 자격제도의 운영 실태는 법령이 상정한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양성 원칙과 현격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준사서 발급 비중의 지속적 감소, 지정교육기관 경로의 과도한 확대, 전문대학 문헌정보과의 양적 축소는 20년 이상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변화로서,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운영 실태는 준사서 자격제도가 제도적 설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방치한 채 운영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준사서 자격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직시와 그에 기반한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6. 결 론

본 연구는 준사서 자격제도를 법령의 변천 과정과 자격취득 현황이라는 두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1987년 「도서관법」 개정으로 확립된 준사서 취득의 세 경로 체계는 2006년 전부개정, 2023년 개정, 2026년 시행령 개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실질적 변화 없이 약 40년간 유지되었다. 이러한 지속성은 제도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그만큼 도서관 환경과 고등교육 생태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국가도서관위원회(2025)의 심층 검토를 통해 2급정사서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 제시되었으나, 준사서 자격요건의 핵심 조항인 전문대학 및 지정교육기관 관련 규정은 ‘추후 논의’로 유보되었다는 점은 이 문제가 여전히 미결 상태임을 보여준다. 준사서 자격이 독립적인 직급으로 존치되어야 한다면, 전문대학을 핵심 양성기관으로 하여 그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맞춘 교육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2급정사서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 단계로서 기능한다면, 전문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삼아 지정교육기관 및 대학 부전공 경로와의 형평성을 재정비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전문대학 중심의 정규 교육과정이

핵심 축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적 선택과 그에 따른 제도 설계는 향후 사서 자격 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둘째, 자격취득 경로 간 형평성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급정사서 중심으로의 배출 구조 심화와 지정교육기관을 통한 준사서 취득 비중의 확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난 20여 년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 변화이다. 이는 전문대학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법령과 실제 운영 현실과의 간극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 있는 지정교육기관 간 교육과정, 교육 수준, 학생 구성, 교육 성과의 차이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로별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정교육기관의 교육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일관된 질 관리 기준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제도 설계와 운영 현실 사이의 간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준사서 자격취득 경로는 애초 전문대학(가목)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나, 이후 지정교육기관(나목) 경로가 크게 확대되었고, 대학 부전공(다목) 경로 역시 그 비중(5.4%)은 미미하나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 결과 동일한 준사서 자격이 상이한 배경과 규모의 교육 경로를 통해 부여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세 경로가 서로 다른 이수 요건과 교육 과정을 유지하면서도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는 현 체계는 자격증이 지니는 본래의 의미를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 사서 자격제도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6년 2급정사서 승급 경력 요건의 일원화는 승급 단계의 형평성을 부분적으로 해소하였으나 준사

서 자격취득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목·나목·다목 전 경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교육과정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표준교육과정의 부재로 각 경로는 기관·학교별로 상이한 교과를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 동일한 자격이 통일된 기준 없이 부여되는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준사서 자격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 경로에 공통 적용될 표준교육과정의 마련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사서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준사서 자격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는 2급정사서 자격취득의 확대, 학점은행제의 확산, 1급정사서 자격의 현실적 위상 등과 서로 맞닿아 있어, 어느 하나만을 따로 떼어 논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준사서 자격에 국한된 부분적 개선보다는, 사서 자격제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검토와 통합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는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 및 전문대학의 의견, 도서관계의 현장 수요, 그리고 학습자의 선택 추이를 균형 있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준사서 자격제도의 법·제도적 변천과 자격취득 경로별 현황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는데, 이는 준사서 제도에 관한 후속 논의가 제도의 형성·변화 과정과 취득 경로 구조에 대한 실증적 정리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취득 경로별 취업 현황, 준사서와 정사서의 직무 범위 및 역할 구분, 전문대학 교육과정과 도서관 현장 수요 간의 정합성 등 자격취득 이후의 노동시장·직무 차원의 분석은 본 연구가 정리한 제도·경로 분석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는 준사서 자격자의 실제 직무와 2급정사서로의 전환 양상을 포함하여 사서 자격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준사서 자격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1963년 도서관법 제정 이후 2026년까지의 법적 변천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한국도서관협회의 60년 이상의 누적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자

격취득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었던 준사서 자격제도의 변천과 현황을 포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사서 자격제도 개선 논의에서 준사서 자격에 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사서 자격제도의 균형 잡힌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곽동철 (2009). 사서자격제도의 변화 추이 및 개선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339-361. <https://doi.org/10.16981/kliiss.40.1.200903.339>
- 곽동철, 심경, 윤정옥 (2009).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안 도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193-213. <https://doi.org/10.4275/KSLIS.2009.43.2.193>
- 국가도서관위원회 (2025). 도서관 전문 인력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도서관 전문 인력 역량 강화 특별전문위원회 워킹페이퍼 (12-1371902-000027-01).
- 남태우 (1990). 사서자격제도 이대로 좋은가. 도서관문화, 31(6), 13-28.
- 남태우 (1996). 사서직의 전문성과 국가고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1996년도 제3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5-118.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법률 제4746호.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문화체육부령 제16호.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339호.
- 도서관법. 법률 제1424호.
- 도서관법. 법률 제19592호.
- 도서관법. 법률 제21090호.
- 도서관법. 법률 제3972호.
- 도서관법. 법률 제8029호.
- 도서관법시행규칙. 문교부령 제570호.
- 도서관법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61호.
- 도서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2506호.

- 도서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963호.
도서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0797호.
도서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086호.
도서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64호.
도서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533호.
도서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2호.
도서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4191호.
도서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8583호.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08). 사서직원 자격요건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11-1371000-000036-0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1). 사서 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12-1371827-000009-01).
도서관정책기획단 (2015). 사서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도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 연구 (12-1371604-000021-01).
도서관진흥법. 법률 제4347호.
도서관진흥법시행규칙. 문화부령 제7호.
도서관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342호.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9호.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0호.
안인자, 노영희, 이종문, 오세훈 (2014). 사서직 취업률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27-52. <https://doi.org/10.4275/KSLIS.2014.48.1.027>
오지은, 정연경 (2013). 사서 자격시험 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239-258. <https://doi.org/10.14699/kbiblia.2013.24.4.239>
정동열 (2007). 사서자격제도 개선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2), 5-29.
한국노동연구원 (2003). 자격제도의 비전과 발전 방안 (2003-11).
홍현진, 노영희, 노지윤 (2021). 사서자격인증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논의 및 분석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3), 17-56. <https://doi.org/10.4275/KSLIS.2021.55.3.017>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Allied Professional Association. (n.d.). Library support staff certification. Available: <https://ala-apa.org/lssc/>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n.d.). Library technical assistants programs. Available: <https://www.ala.org/educationcareers/library-technical-assistants-programs>
Arthur, W. B. (1994). Increasing Returns and Path Dependence in the Economy.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재인용: Pierson, P. (2000).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2), 251-267. <https://doi.org/10.2307/2586011>

-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n.d.). Certification (ACLIP). Available: <https://www.cilip.org.uk/learn-develop/professional-registration/aclip/>
- Erickson, N. & Shamchuk, L. (2017). Paraprofessional library education in Canada: An environmental scan.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41(1-2), 18-41. <https://muse.jhu.edu/article/666447>
- Greenwood, E. (1957). Attributes of a profession. *Social Work*, 2(3), 45-55. <https://doi.org/10.1093/sw/2.3.45>
- Larson, M. S. (2003). Professionalism: The third logic (review).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46(3), 458-462. <https://doi.org/10.1353/pbm.2003.0037>
- Mahoney, J. & Thelen, K. (2009). A theory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In Mahoney, J. & Thelen, K. eds.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mbiguity, Agency, and Pow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0.
- North, D. C. (1991). Institut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5(1), 97-112. <https://doi.org/10.1257/jep.5.1.97>
- Oberg, L. R. (1992). The emergence of the paraprofessional in academic libraries: Perceptions and realit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3(2), 99-112. https://doi.org/10.5860/crl_53_02_99
- Pierson, P. (2000).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2), 251-267. <https://doi.org/10.2307/2586011>
- Zhu, L. (2012). The role of paraprofessionals in technical services in academic librarie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56(3), 127-154. <https://doi.org/10.5860/lrts.56n3.127>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In-Ja, Noh, Younghee, Lee, Jongmoon, & Oh, Se-Hoon (2014).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librarianship employ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1), 27-52. <https://doi.org/10.4275/KSLIS.2014.48.1.027>
-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21).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brarian Qualification System and Curriculum* (12-1371827-000009-01).
-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ies Act. Presidential Decree No. 12506.
-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ies Act. Presidential Decree No. 19963.
-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ie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0797.

-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ie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086.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ies Act, Presidential Decree No. 2964.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ies Act, Presidential Decree No. 34533.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ies Act, Presidential Decree No. 36322.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ies Act, Presidential Decree No. 4191.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ies Act, Presidential Decree No. 8583.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ies and Reading Promotion Act, Presidential Decree No. 14339.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ies Promotion Act, Presidential Decree No. 13342.
Enforcement Rule of the Libraries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No. 161.
Enforcement Rule of the Libraries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No. 570.
Enforcement Rule of the Libraries and Reading Promotion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No. 16.
Enforcement Rule of the Libraries Promotion Ac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No. 7.
Hong, Hyun-Jin, Noh, Younghee, & Ro, Ji-Yoon (2021). Discussion and analysis study on the introduction plan of the librarian qualifica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3), 17-56. <https://doi.org/0.4275/KSLIS.2021.55.3.017>
Jeong, Dong-Youl (2007). A study on the credential system of libraria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2), 5-29.
Korea Labor Institute (2003). Vis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Qualification System (2003-11).
Kwack, Dong-Chul (2009). Librarian certification in Korea: history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339-361. <https://doi.org/10.16981/kliss.40.1.200903.339>
Kwack, Dong-Chul, Shim, Kyung, & Yoon, Cheong-Ok (200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brarian certification syste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2), 193-213. <https://doi.org/10.4275/KSLIS.2009.43.2.193>
Libraries Act, Act No. 1424.
Libraries Act, Act No. 19592.
Libraries Act, Act No. 21090.
Libraries Act, Act No. 3972.
Libraries Act, Act No. 8029.
Libraries and Reading Promotion Act, Act No. 4746.

- Libraries Promotion Act, Act No. 4347.
-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Planning Division. (2008). A Preliminary Study on the Revision of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Librarians (11-1371000-000036-01).
- Library Policy Planning Bureau (2015). A Study on Improving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Professional Workforce Development System for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ism of Librarians (12-1371604-000021-01).
- Nam, Tae-Woo (1990). A critical review of the librarian qualification system in Korea. *Library Culture*, 31(6), 13-28.
- Nam, Tae-Woo (1996).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certification test for librarianship. *Proceedings of the 3rd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15-118.
- National Library Committee (2025). A Study on Measures to Strengthen the Competency of Library Professionals: Working Paper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Strengthening the Competency of Library Professionals (12-1371902-000027-01).
- Notice on the Curriculum and Completion Credits of Librarian Education Institution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otice No. 2007-9.
- Notice on the Curriculum and Completion Credits of Librarian Education Institution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otice No. 2018-30.
- Oh, Ji Eun & Chung, Yeon Kyoung (2013). A study on introducing librarian license examin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239-258. <https://doi.org/10.14699/kbiblia.2013.24.4.239>

